

강릉시청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

「영유아보육법」 제14조 및 동법 제24조, 동법 시행규칙 제24조, 「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」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청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(위탁운영체를 포함하며, 이하 “위탁운영자” 라 한다)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24년 3월 8일
강릉시장

1. 위탁운영 대상시설

시설명	소재지	시설규모	보육정원	비고
강릉시청 어린이집	강릉시 강릉대로33(홍제동)	지상2층, 지하1층 연면적 808㎡	99명	

2. 위탁기간 : 2024. 04. 08. ~ 2029. 01. 31. (5년)

3. 신청서 교부 및 접수

가. 모집일정

모집공고	접수기간	서류전형 합격발표 및 면접공고	면접시험		최종합격 발표
			일시	장소	
'24.3.8.(금) ~3.27.(수)	'24.3.18.(월) ~3.27.(수)	'24.3.29.(금) (예정)	'24.4.3.(수) (예정)	면접시험 공고 시 안내	'24.4.5.(금) (예정)

다. 제출방법: 근무시간 내 방문제출(09:00 ~ 18:00)

라. 제출장소: 강릉시청 10층 행정지원과(후생복지계 ☎033-660-5430)

- 토·일요일, 공휴일 제외(인터넷, 우편, 대리 제출 불가)

※ 응시원서 등 소정 양식, 시험장소 공고, 합격자명단 발표 등 시험 관련 사항은 강릉시 홈페이지(<http://www.gangneung.go.kr>) 고시공고 게시판에 공고

4. 위탁운영자 자격요건

[공통사항]

-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 능력과 사회복지사업 수행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법인·단체, 개인으로서 보육사업(아동복지사업) 종사 경력이 있어야 함
- 법인·단체일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, 개인일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여야 함

[법인·단체]

- 공고일 현재 강릉시에 주 사무소나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.
 - 보육사업(사회복지사업)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법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, 정관·규약·회칙의 목적사업에 보육사업 등 관련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있고, 이사회 등에서 보육사업을 하기로 의결한 경우

[개인]

- 공고일 현재 강릉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원장 자격을 갖춘자

신청자격 제외대상
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 - 최근 5년 내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상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자
 -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
 -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
- ※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되는 경우도 신청자격 제외

5. 위탁운영 조건

- 위탁범위: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
- 보육대상: 강릉시청 소속 공무원, 공무직 직원, 강릉시의회 의원의 자녀
(청원경찰 포함)
- 보육시간: 평일 07:30~ 19:30 (12시간) + 시간연장형
- 운영재원: 정부보육료, 시보조금, 법인부담금 등 자체수입
- 운영조건
 - 가. 위탁운영자는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법령, 당해연도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안내 및 강릉시 영유아보육조례, 강릉시 보육사업추진 계획, 위·수탁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과 강릉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제25조 또는 「강릉시 영유아보육조례」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
 - 나. 위탁운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,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할 수 없음
 - 다.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수익재산의 활용에 있어서 반드시 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함
 - 라. 보육 교직원 보수는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기준을 준용함
- 기타조건
 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(영아·장애아·그 밖의 연장형·다문화아동 보육) 중 2개 이상을 실시해야 함
 - 시설 운영 중 부족 경비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 운영 능력이 있어야 함
 -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제24조제2항 제5호에 따라 제출하는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에 해당 어린이집의 기존 종사자의 고용 승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함
 - 위탁계약은 계약 내용에 대한 공증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해야 함
 -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위탁선정 무효

6. 심사기준

가. 심사기준

- 「영유아보육법」 시행규칙 제24조의2, 별표8의 2 및 보건복지부 「2024년도 보육사업안내」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·관리 기준 적용

평가 항목	계	어린이집 운영계획	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	운영체의 운영실적	운영체의 공신력	운영체의 재정능력
배점	100	40	35	10	10	5

나. 공통심사기준: 5개분야 100점 만점

심사항목	총점	세부항목		배점
합계	100			
1. 운영체의 공신력	10	도덕적·법적 공신력 -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·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- 운영 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-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 명시 여부		10 8 6
2. 운영체의 운영실적	10	-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-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		10 8 6
3.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	35	- 최근 5년 이내 어린이집 평가(인증)제 결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평가 인증 또는 평가등급 A ● 평가등급 B ● 평가등급 C ● 그 외 	10 7 4 1
		-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10년 이상 ● 7년 이상 ~ 10년 미만 ● 5년 이상 ~ 7년 미만 ● 3년 이상 ~ 5년 미만 ● 3년 미만 	10 7 5 3 1
		- 공모사업 수상실적 - 관련 법령 이해 수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●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	5 4 3
		-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- 운영의지 - 향후 발전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	10 8 6
4. 어린이집 운영계획	40	- 보육사업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 사업 계획 ●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활동 계획 ● 취약보육운영계획 등 	20 16 12
		-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* 보육프로그램,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, 재정 지원, 회계·노무관리 지원 등 포함 	10 8 6
		- 예산의 적절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세입·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	10 8 6
5. 운영체의 재정능력	5	- 위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		5 4 3

7. 사업설명회: 생략

8. 선정방법 및 심사결정

가. 선정방법

- 심사 평가기준안에 의거 공통심사 기준표에 의한 서류 및 면접 심사 (대표자, 원장 내정자)
- 신청자는 심사 당일(추후 통보)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 등에 대한 발표(PPT로 10분 이내)와 심사위원의 질의에 응답하여야 하며, 불참 시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
- 법인·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, 원장 내정자의 동시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, 발표는 원장 내정자가 하여야 함
- 대표자 불참 시 해당법인·단체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의 권한 위임을 받은 자(위임장 지참)의 대리참석 가능

나. 심사결정

-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름
-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·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, 나머지 점수의 합산 평균이 70점 이상이면서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한다. 단,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계산하며, 운영체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위탁체를 결정
- 신청자가 단독일 경우에도 심사하며, 위의 결정 기준을 적용함
- 심사 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,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, 운영체의 운영실적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

다. 심사 결과

- 강릉시청 홈페이지 공고(위탁체로 선정된 자 개별통지)

9. 최종 심사결과 발표

- 발표일시: 2024년 4월 5일 (예정)
- 발표방법: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및 강릉시 홈페이지(<http://www.gangneung.go.kr>) 고시공고에 게재

10. 제출 세부서류

서류 항목		제출대상			비 고	
		법인	단체	개인		
표지		○	○	○	서식1	
서약서		○	○	○	서식2	
목차		○	○	○		
1. 어린이집 위탁신청서		○	○	○	서식3	
2. 운영체 현황	법인 및 단체	위탁운영체(법인, 단체) 현황	○	○		서식4
		주사무소 소재지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및 구성원 조직표	○	○		
		법인정관,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	○			
		단체등록증,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		○		
		어린이집 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	○	○		
		운영실적 증빙자료, 2023년도 법인(단체) 결산요약서 및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내용	○	○		
	설립허가증, 고유번호증(해당되는 경우)	○	○			
개인	위탁운영체(개인) 현황			○	서식5	
3. 운영체의 상세내역	- 이력서(증명사진) 및 자기소개서 - 졸업증명서(최종학교, 관련학과) - 자격증사본(보육관련 자격) 및 원장 자격 관련 증빙자료	○	○	○	◦ 법인,단체의 경우 대표자, 원장 내정자	
4. 운영체의 공신력	-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·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(최근 5년이내) - 운영 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법인정관(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 명시 여부)	○	○	○		
5. 운영체의 운영실적 (최근 3년이내)	-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증빙자료 -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(지역사회협력, 봉사, 후원활동 등에 관한 실적 증빙자료)	○	○	○	◦ 법인,단체의 경우 대표자, 원장 내정자	
6.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	- 평가인증서 사본(평가인증 참여 및 통과 여부 확인용): 최근 5년이내 - 경력증명서 등(보육 등 아동복지관련) - 공모사업 수상실적 및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증빙 자료 - 최근6년 이내 보수교육 및 최근 3년이내 기타 보육 관련 프로그램 및 교육 이수증 -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, 운영의지, 향후 발전계획 등은 소견 발의로 운영능력 종합 평가	○	○	○	◦ 법인,단체의 경우 대표자, 원장 내정자	
7. 어린이집 운영계획	-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 계획 -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- 특수교육 및 취약보육 운영계획 등 -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(보육프로그램,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, 재정지원, 회계·노무관리 지원 등 포함) - 어린이집 운영규정(운영위원회 구성 포함) - 2024년 세입·세출에 관한 예산서	○	○	○	서식 6 ◦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(별표8), (별표8의4)참조 ◦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· 회계 규칙 참조	

서류 항목		제출대상			비 고
		법인	단체	개인	
8. 운영체의 재정능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정상태 및 약속서 - 자부담승낙서 - 어린이집 운영자부담 조달계획서 - 건물 및 토지: 등기부 등본 - 아파트, 다세대, 연립 등: 공동주택가격 확인원 - 단독주택: 주택가격 확인원 - 토지: 공시지가확인원 - 전·월세 계약서 - 상가, 기타: 세목별납세증명서(비고란 과표 기록) - 예금잔액증명서(기준일 현재 잔액 증명) - 동산(정기 예금성 예금만 인정) - 차량가액 증빙(차량등록증, 보험계약서류 첨부) - 부채증명서(개인신용 정보조회서, 등기부등본 설정액 필수) -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(평가)회사에서 발급한 개인신용정보(보고)서 - 신용정보조회서(한국신용정보원) - 보험 등(보장성 보험 제외) 	○	○	○	서식 7 서식 8 ◦ 재산입증자료는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하여 인정 ◦ 금융재산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 ◦ 법인(법인명의 재산) ◦ 단체(단체명의 재산) ◦ 개인(부부 자산, 배우자 50%인정) ◦ 법인, 단체, 개인 공통사항으로 부채 현황은 자산에서 경감함
9. 결격사유 확인 등 기타 제출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민등록초본(최근3년간 주소이력포함)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채용신체검사서(공무원 기준)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인감증명서 (법인, 단체의 경우 법인,단체의 인감)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기타 공립어린이집 위탁체 (신규)심사 관련 제출하고자 하는 서류 	○	○	○	◦ 법인,단체의 경우 대표자, 원장 내정자 서식 9 서식 10 자유서식

-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강릉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
- 표지를 포함하여 목차를 작성한 후 상기 목록 순으로 편철하며, 임의 변경 금지
- 『어린이집 위탁신청서』를 첫 페이지로 하여 제출서류 번호 1, 2, 3 순으로 1권의 책자(간지(색인지)로 구분, 견출지 부착 및 쪽수 기재)로 **양면 제본**하여 **총 10부 제출(원본 1부, 사본 9부)**
- PPT: 10분 이내 발표 자료 USB 제출
 - ※ PPT는 공통심사 항목을 기준으로 운영체의 공신력 → 운영체의 운영 실적 →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→ 어린이집 운영계획 → 운영체의 재정능력 순으로 작성 및 발표
- 제출 후 내용 변경 불가

11. 유의사항

-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·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, 제출서류 누락으로 인해 인정이 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
-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을 무효·취소로 함
- 위탁운영 조건 등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「영유아보육법」 및 기타 관련 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(필요시 개인별 해당 어린이집 현장 확인)
- 선정된 위탁체는 지정된 기일 내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
 - ※ 지정된 기일까지 위·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운영자 선정을 무효·취소로 함
- 선정된 위탁체에 결격사유가 있거나, 지정된 기일 내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위탁체의 위탁운영자 선정은 무효·취소로 하고,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운영체 중 차순위 운영체를 선정할 수 있음
-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강릉시의 유권해석에 따름
- 문의사항: 행정지원과 후생복지계(☎ 033-640-5430)

- 붙임 1. 【서식1~10】 강릉시청 어린이집 위탁신청 관련 서식 각1부.
2. 【별지1】 위탁체 공통심사기준표 1부.
3. 【별지2】 위탁심사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1부.